

위생용품의 종류

종류	시행전 소관법률
세척제, 행굼보조제	(구)공중위생법 (복지부)
위생물수건	
일회용 이쑤시개	
일회용 종이냅킨	
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	
일회용 컵	
일회용 숟가락, 일회용 젓가락	식품위생법 (식약처)
일회용 포크, 일회용 나이프	
일회용 빨대	
화장지	
일회용 면봉 (어린이용, 성인용)	
일회용 기저귀 (어린이용, 성인용)	
일회용 행주, 일회용 타월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(산업부)
일회용 팬티라이너 * 의약외품 제외	
건티슈 * 최종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	

한 눈에 보는 영업자 준수사항

구분	제조업	수입업	처리업
영업신고	○	○	○
수입신고	×	○	×
자가품질검사	○	×	○
품목제조보고	△	×	×
생산실적보고	○	×	○
위생교육	○	○	○
표시 기준	○	○	○
관할기관	시·군·구	지방식약청	시·군·구

△ : 세척제, 행굼보조제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 일회용 기저귀, 일회용 팬티라이너 5개 품목에 해당

위생용품안전관리! 이제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합니다.

2018년 4월 19일부터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이 시행됩니다.
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**영업자 준수사항**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
입법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
향후 추가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위생용품에 관한 주요내용 이렇게 확인하세요!

‘식품의약품안전처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

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

번호	제목	고시번호	등록일	첨부	조회
41	'간접가능식품의 기준 및 규정, 일부 개정고시 ...	제2018-12호	2018-02-28	572	
41	'속산물이 표시기준, 일부 개정고시 ...	제2018-9호	2018-02-23	2849	
41	'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, 일부 개...	2018-75	2018-02-14	4623	
41	'포그 대상 이물질 범위의 조사·결과 등에 관한 ...	제2018-4호	2018-01-10	11326	
41	'속산물이공인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, 개정고시 ...	제2018-11호	2018-01-03	8878	
41	통합식품안전관리중앙 운영협의회 규정 (운협) 개정	운협 제113호	2017-12-28	4098	
41	'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, 수입, 수리 실적 보고에...	2017-110호	2017-12-27	4318	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·담배관리팀

문의 043-719-1737~44 발행일 2018. 3. 5

동 홍보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> 법령·자료 > 홍보물 자료 >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 안내

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안전관리 업무는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며
영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

1. 위생용품 제조



영업신고

-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: 1. 영업신고서, 2. 위생교육 수료증
3.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
(제조 중 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)
- ※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
- 신고사항의 변경, 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자가품질검사

-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. ※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 가능
- 품목제조보고대상: 1회 이상/3개월 • 그 외 위생용품: 1회 이상/6개월

품목제조보고

- 세척제, 헹굼보조제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 일회용기저귀,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제조 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.
-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생산 후 7일 이내 시·군·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생산실적보고

-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실적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위생교육

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신규교육 : 4시간 교육 • 보수교육 : 3시간 교육

표시기준

- '위생용품'이라는 글자
- 내용량
- 제품명
- 제조연월일
- 업체명 및 소재지
- 원료명 또는 성분명
-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

※ 일부 위생용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음

2. 위생용품 수입



영업신고

- 시설기준을 갖추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: 1. 영업신고서, 2. 위생교육 수료증
3.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(임차한 경우만 해당)
- ※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
- 신고사항의 변경, 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수입신고 및 검사

- 위생용품 수입 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수입신고 후 통관 전 검사를 시행 합니다.
(서류검사, 현장검사, 정밀검사, 무작위표본검사)
- 부적합 시, 반송·반출·폐기 하여야 합니다.

위생교육

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신규교육 : 4시간 교육 • 보수교육 : 3시간 교육

표시기준

- '위생용품'이라는 글자
- 내용량
- 제품명
- 제조연월일
- 업체명 및 소재지
- 원료명 또는 성분명
-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

※ 일부 위생용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음

3. 위생물수건 처리



영업신고

-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: 1. 영업신고서, 2. 위생교육 수료증
3.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
- ※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
- 신고사항의 변경, 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자가품질검사

- 위생물수건은 월 1회 이상(중금속 항목은 6개월에 1회 이상)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.
- ※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 가능

생산실적보고

-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생처리 실적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위생교육

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신규교육 : 4시간 교육 • 보수교육 : 3시간 교육

표시기준

- '위생용품'이라는 글자
- 업체명 및 소재지
-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